# - 서울특별시 자동차 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 1. 제안경위

가. 제 출 자 : 박기열 의원 외 16명

나. 의안번호 : 제913호

다. 제출일자 : 2015. 11. 26.

라. 회부일자 : 2015. 11. 30.

## 2. 제안사유

○ 자동차정비업 중 자동차종합정비업, 소형자동차정비업, 원동기전문 정비업은 실제 현장에서 필요한 정비요원 규모가 서로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정비업의 등록기준은 동일하게 자격증 소지 정비 사1)를 최소 3인 이상 확보하도록 하고 있어 불합리한 부분이 존재 하는 한편 자격증 소지 정비사 부족으로 업계에서는 인력 확보가 어려운 실정인 바.

자동차종합정비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정비요원 규모가 작은 소형자 동차정비업과 원동기전문정비업의 자격증 소지 정비사 확보 기준을 일부 개선하고자 함

<sup>1) 「</sup>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동차정비에 관한 산업기사 이상 또는 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 3. 주요내용

가. 자동차정비업의 등록기준 중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소지 정비사의 최소 확보 기준2)을 소형자동차정비업과 원동기전문정비업의 경우 기존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변경하는 한편정비요원 총수 규모에 따른 자격증 소지 정비사의 확보 기준을 기존 "16명 이상인 경우 총수의 5분의 1이상"에서 "11명 이상인 경우 총수의 5분의 1이상"으로 변경함(안 제5조제1항제2호)

## 4. 참고사항

가. 관련 법령

○『자동차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나. 예산 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입법예고

○ 기 간: 2015.12.3 ~ 12.10

○ 제출의견 : 없음

라. 관련부서 의견조회 결과

○ 서울시장(도시교통본부 택시물류과) : 원안 동의

<sup>2)</sup> 정비책임자 1명 포함

#### 5. 검토의견(수석전문위원 김동수)

#### 가. 개요

○ 동 개정조례안은 자동차관리법령의 자동차정비업 중 '소형자동차 정비업'과 '원동기전문정비업'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소지 정비사의 최소 확보 기준을 현행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변경하고.

정비요원 총수 규모에 따른 자격증 소지 정비사 확보기준을 현행 '16명 이상인 경우 총수의 5분의 1이상'에서 '11명 이상인 경우 총수의 5분의 1이상'으로 다소 완화하고자 하는 것임

#### ※ 참고 : 조례 개정에 따른 자동차정비업 정비사 확보 기준 변경 내용

구분	현행	조례개정 후
자동차종합정비업	3명이상. 정비요원 총수가 16명	<u>3명이상</u> . 정비요원 총수가 <u>16명</u> <u>이상</u> 인 경우 총수의 5분의 1이상
소형자동차정비업	<u>이상</u> 인 경우 총수의 5분의 1이상	<b>2명이상</b> . 정비요원 총수가 <u>11명</u>
원동기전문정비업		<u>이상</u> 인 경우 총수의 5분의 1이상
자동차전문정비업	<u>1명이상</u> . 정비요원 총수가 <u>6명</u> <u>이상</u> 인 경우 총수의 5분의 1이상	<u>1명이상</u> . 정비요원 총수가 <u>6명</u> <u>이상</u> 인 경우 총수의 5분의 1이상

## 나. 검토의견

○ 현행 「자동차관리법 시행령」3)및 같은 법 시행규칙4)에서는 자동차 정비업을 '자동차종합정비업', '소형자동차정비업', '자동차전문정비업', '원동기전문정비업'으로 구분하여 각 업종별 작업범위를 규정하고 있으며, 「자동차관리법」5)에서는 자동차정비업의 자격증 소지 정비사 확보 기준 등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sup>3)「</sup>자동차관리법 시행령」제12조(자동차정비업의 세분)

<sup>4) 「</sup>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131조(자동차정비업의 작업범위)

<sup>5) 「</sup>자동차관리법」제53조(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 등) ③ 제1항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또는 도(특별자치도를 포함한다)의 조례로 정한다.

#### ※ 참고 : 자동차정비업별 작업범위 및 시설기준

구분	작업범위	시설기준
자동차종합 정비업	모든 종류의 자동차에 대한 점검、정비 및 구조、장치의 변경작업	$1,000 m^2$
소형자동차 정비업	승용자동차、경형 및 소형의 승합 <sup>6)</sup> 、화물 <sup>7)</sup> 、특수자동차 <sup>8)</sup> 에 대한 점검、정비 및 구조、장치의 변경작업	$400  m^2$
자동차전문 정비업	자동차부분정비업의 작업제한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구조·장치에 대한 점검·정비 및 변경(※일반적으로 카센터를 지칭함)	$50m^2$
원동기전문 정비업	자동차원동기의 재생정비 및 구조변경	$300  m^2$

○ 2015년 9월 기준 서울시 자동차정비업 등록현황 및 업종별 종사자수 현황을 살펴보면 '소형자동차정비업'과 '원동기전문정비업'의 평균 종사자수는 각각 8.5명과 6.0명으로 '자동차종합정비업' 평균 종사자수(19.0명)의 31.6%~44.7%에 불과한 실정임

※ 참고 : 자동차정비업종별 종사자수 현황(2015.9월 기준)

구분	계	자동차종합 정비업	소형자동차 정비업	원동기전문 정비업	자동차전문 정비업
업체수@ (개소)	3,960	224	309	4	3,423
종사자수(b) (명)	13,683	4,252	2,638	24	6,769
업체당 종사자수 ⑤/ⓐ (명)	3.5	19.0	8.5	6.0	2.0

○ 또한, '자동차종합정비업'은 모든 종류의 자동차에 대한 정비·작업을 할 수 있는데 비해 '소형자동차정비업'은 이보다 제한된 범위의 차종에 대해 정비를 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소형자동차정비업'과 '원동기전문정비업'의 자격증 소지자 확보 기준을 '자동차종합정비업'과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다소 불합리한 면이 있고,

<sup>6)</sup> 승차정원이 15인이하인 것으로서 길이 4.7미터 \ 너비 1.7미터 \ 높이 2.0미터 이하인 것

<sup>7)</sup> 최대적재량이 1톤이하인 것으로서, 총중량이 3.5톤 이하인 것

<sup>8)</sup> 총중량이 3.5톤 이하인 것

'소형자동차정비업'의 경우에는 최근 수년간 자동차 성능 향상 및 내구성 강화 등에 따라 엔진 및 미션의 교체·수리 등 전통적인 자동차정비 보다는 판금 및 도색 등 차량 외부 복원이나 경정비 등의 업무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에서 '소형자동차정비업' 등의 자동차정비 자격증 소지자 확보 기준을 완화할 필요가 있을 것임

※ 참고 : 조례개정에 따른 종사자 규모별 자격증 소지자 확보 기준 변화

구분		15명	형 이하	16명~20명	21명~25명	26명~30명
자동차종합전	성비업		3	4	5	6
소형자동차 종합정비업 및 원동기전문 개정 정비업		3	4	5	6	
	개정	10명 이하	11명~15명	4	5	6
		<u>2</u>	3			

- 이와 함께 자동차 정비업의 환경 변화를 고려하여 판금 및 도색에 대한 자격증 소지자의 확보 기준을 새롭게 마련하는 등 현실을 반영한 제도 정비도 심도 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한편, 서울시장은 동 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 동의' 의견<sup>9)</sup>을 제출 하였음

<sup>9)</sup> 교통정책과-34595(2015.12.14.)